

## 합병 종료보고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17년 3월 24일 개최된 합병승인 주주총회 같은 이사회에서 쌍용해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합병에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쳤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공고의 보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같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당사와 쌍용해운 주식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아 래 ---

### 1. 흡수합병의 내용

가. 합병방법

－ 쌍용양회공업(주)가 쌍용해운(주)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쌍용해운(주)는 소멸함

나. 합병비율

－ 쌍용양회공업(주) : 쌍용해운(주) = 1 : 0.1198785

다.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 쌍용양회공업(주)의 보통주식 4,795,140주

라.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쌍용양회공업(주)의 자본금 : 23,975,700,000원

마. 합병기일: 2017년 4월 25일

### 2. 합병 진행 경과

2017년 2월 22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17년 2월 23일	합병계약 체결
2017년 3월 9일	소규모합병 공고
2017년 3월 24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같은 이사회 결의
2017년 3월 24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17년 4월 24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2017년 4월 25일	합병기일
2017년 4월 25일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17년 4월 25일자 공고로 같음하기로 결의
2016년 4월 28일	합병등기 예정일

2017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저동2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사장 황 동 철